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
- 나.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검토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과 관계 없이 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.

제62조제2항제1호 중 “제8호”를 “제8호 및 제1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<u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 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검토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.</u>
<u>④ ~ ⑥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</u> <u>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 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과 관계 없이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.</u>
<u>⑦ (생 략)</u>	<u>⑨ (현행 제7항과 같음)</u>
제62조(사채발행) ① (생 략)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 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. 1.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<u>제8</u>	제62조(사채발행) ① (현행과 같 음) <u>②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1. ----- <u>제8</u>

<u>호</u>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 산액의 4배 이내 2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<u>호 및 제11호</u>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962